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46911 판결 [구상금청구소송]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서정원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원

변론 종결 2019. 1. 9.

판결 선고 2019. 2. 13.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 선고 2011가소133996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33,490원 및 그 중 11,473,138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값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로부터 차량을 할부구매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2000. 3.경 보험가입금액 12,100,000원, 보험기간 2000. 3. 15.부터 2002. 9. 14.까지의 할부판매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C에 대한 위 할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0. 9. 30. C에 11,473,138원을 지급하였다.

3) 2010. 12. 31. 기준 위 구상금 채권의 잔존 원금은 11,473,138원,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22,360,35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도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참조).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0가소199651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73,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정본이 공시송달되어 2001. 6.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수 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의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2011. 1. 3.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 원금 및 기준일인 2010.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인 33,833,490원 및 그 중 구상금 채권 원금 11,473,138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00가소199651호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근수, 판사 정지선, 판사 한재상